민법 제214조 [소유물방해제거, 방해예방청구권]

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.

전단 ⇒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후단 ⇒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.

관련 문서

- 소유권의 취득

From:
http://jace.link/ - **Various Ways**

Permanent link:
http://jace.link/open/%EC%86%8C%EC%9C%A0%EB%AC%BC%EB%B0%A9%ED%95%B4%EC%A0%9C%EA%B1%B0

Last update: **2020/10/25 10:34**